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2년 6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회계감리절차  
신속화 및 투명화

### 세무 및 법률정보

-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 및 관련 세법개정  
방향 발표 등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감리절차의  
신속화 및 투명성  
개선

회계정보 등

■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2.0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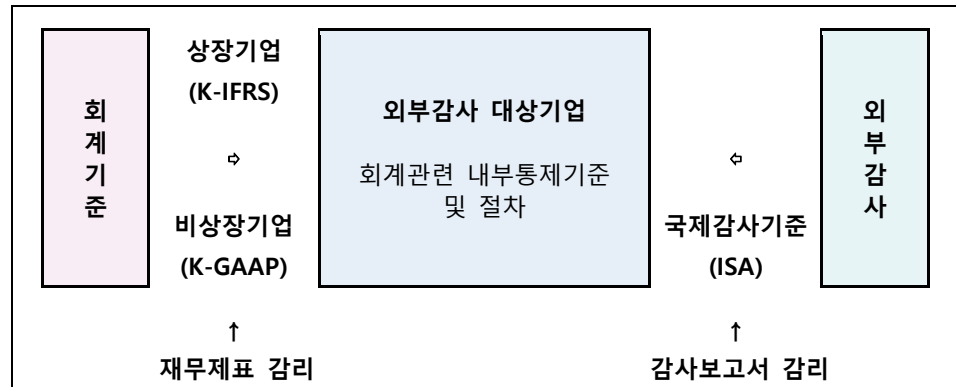
주요 내용

-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
  -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 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로 6 개월 연장
  -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배경

1 추진 배경

-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업무입니다.



- 회계감리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sup>\*</sup>”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 새정부 국정과제 36.「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자본시장 투명성은 공시된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에서 시작되는데 회계감리는 부적절한 회계정보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감독수단이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다양한 회계처리방식을 인정하는 원칙 중심의 IFRS 체계 하에서 감리는 기업들에게 회계처리방식을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회계개혁 이후 회계감리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

\* 위반동기와 정도에 따라 과징금, 임직원 면직, 검찰 고발 등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조치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

○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되었고,

\*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미한 위반조치(경과실)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

\*\* 재무제표 심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까지의 처리기간은 평균 91일('21년 기준)로, 제도도입 ('19.4월) 前 경조치 및 무혐의 건 등의 감리처리기간 171일('16~'18년 평균) 대비 대폭 축소

○ 대심제\* 등의 도입으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강화되어 제재공정성과 합리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 감리위·증선위 심의과정에서 피조사자와 감리집행기관이 사실관계, 법률의 적용에 대해 공방(攻防)

□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과 피조사자 방어권의 실효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7차 임시 증선위('22.3.11) 의결사항 : ①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②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

□ 이에 정부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2 주요 내용

**가. 감리 조사기한(원칙 1년)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감리종료 도모**

-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부재하여,
  -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 최근 4년간('18~'21년) 감리 조사기간 통계(총 225건, 심사 종결은 제외)  
1년 이내:136건(61%), 1~2년:65건(29%), 2~3년:19건(8%), 3년 초과:5건(2%)
- (개선) 금감원 감리 조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이 명문화됩니다.
  -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6개월 단위로 연장·추가연장 가능)
  - \* 예) 감리방해 또는 피조사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 또한, 금감원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①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 (현행)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적발 시 퇴거)
  - 기록 행위까지 제한함으로써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선)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 경찰청 사례(자기변호노트):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방어권 내용, 행사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고, 수사과정을 메모할 수 있는 공란이 제공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수검노트」를 마련·제공 할 예정

②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 (현행) 피조사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확인서\***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 열람이 가능한 반면,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 예야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 피조사자가 수행한 업무 관련 특정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서류

\*\*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증선위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

○ 이에 피조사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 감리업무 주요 처리 절차

① 감리 착수 → ② 감리 실시(문답 포함) → ③ 질문서 송부 → ④ 처리안 결재 → ⑤ 조치 사전통지 → ⑥ 감리위 심의 → ⑦ 증선위 의결

③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 (현행)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 구두 요청은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 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 (현행) 사전통지서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거, 사실관계, 지적금액 산출 사유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해,

○ 피조사자가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①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지적사항별)

-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② 또한,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겠습니다\*\*

\* 다만, 고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조치자 간 공모, 증거인멸이나 비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의 조정

\*\* 과징금·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산정내역 및 근거, 감사인 지정기간 등 제시

#### ⑤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 (현행) 피조사자가 現 감리실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문답과정에서 감사조서 등 필요자료 지참·열람이 가능하고, 회사 소속 회계사 등 전문가 조력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개선) 금감원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인은 감사조서 및 재무제표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고, 회사 관계자도 회사 자료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음

\*\* 외감규정 제 24 조제 4 항 및 행정절차법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피조사자는 법인 임직원에게 대한 조사과정 입회 요청 가능

향후 계획

3 향후 계획

- (규정 개정)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22.6월) 후 3/4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실무 관행 개선)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과제별 목록

| 구분             | 세부 과제                  | 조치 필요사항            |
|----------------|------------------------|--------------------|
| 감리 수행 효율화      | 감리 조사기한 명문화            | 시행세칙 개정            |
|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 □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 외감규정 개정            |
|                | □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 외감규정 개정<br>시행세칙 개정 |
|                | □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 외감규정 개정<br>감리실무 개선 |
|                | □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 감리실무 개선            |
|                | □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 감리실무 개선            |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세정동향,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 및 관련 세법개정 방향 발표 외

정부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 및  
관련 세법개정  
방향 발표

정부는 5.30(월)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한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생활·밥상물가 안정

-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식품원료·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sup>1</sup> 할당관세 적용
  - \*1. 대상 품목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 / 나프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전해액첨가제, 인산이암모늄
  -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
  -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판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비용 경감
- (식품품비 인하)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 개별포장된 가공식품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3년말까지 10%p 상향

□ 생계비 부담 경감

- (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5% → 3.5%, 100만원 한도)을 6개월 연장('22.12.31. 종료)
- (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리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 중산·서민 주거안정

-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증부세 부담 완화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제 개편 추진 (3분기)
-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5.10일 소급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sup>2</sup>
    - \*2.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2)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 (금융접근성 제고)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국세청,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국세청은 6.23일 보도자료에서 '22년 9월부터 기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개요
  - 기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sup>3</sup>를 적용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의무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1 맞춤형 세정지원제도
  - \*3. 기업상속공제,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지원내용
  - (컨설팅 기간)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추가 1년 연장 가능) 기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 지원
  - (컨설팅 내용) 컨설팅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 진단(요건 진단), 컨설팅 대상 기업이 관련 자문요청 시 4주 이내에 의견 제시(상시 자문실시) 및 기업승계 관련 서면질의 제출 시 최우선 처리(서면질의 우선처리)
  - 기업승계 관련 법령해석 신속 제공
- 신청방법
  - (신청대상)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기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22.7.1. (금) ~ 8.1. (월)까지 핫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www.nts.go.kr](http://www.nts.go.kr) 에서 조회)
  - (컨설팅 대상 선정) 서면심사 1차 선정결과는 '22.8.31. (수)까지 고지 예정

주요 개정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 1세대 1주택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식 일원화
  - (종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는 달리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
  - (개정)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음
  - (개정) 전입요건 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종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20% 또는 30% 가중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 (개정)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2.6.7)

- 납부지연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춤 (시행일(2022.6.7.) 이후 기간분에 대해 적용)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상증세법 상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에 대한 평가 (서면-2022-자본거래-1800, 2022.06.07)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신청법인의 주주 명단은 다음과 같음.

| 주주명  | 주식 수    | 지분율  | 관계   |
|------|---------|------|------|
| 갑    | 30,000  | 30%  | 본인   |
| 을    | 15,000  | 15%  | 형제   |
| 병    | 5,000   | 5%   | 조카   |
| 신청법인 | 50,000  | 50%  | 자기주식 |
| 합계   | 100,000 | 100% | -    |

- 신청법인은 자기주식을 일시적 보유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따름.

(질의내용)

-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 시 자기주식을 순자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평가 방법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자본거래-2952 (2021.7.7.), 서면-2020-자본거래-2616 (2020.7.6.), 서일46014-10200 (2001.9.19.), 재재산-1494 (2004.11.10.)

- 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가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4819, 2022.05.26)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A법인에서 물적 분할 되어 설립된 법인임.

- A법인은 물적분할 과정에서 질의법인의 지분 60%를 B외국법인에 양도하였으며, 2020 사업연도말 질의법인의 지배구조는 아래와 같음

외국정부 ->(100%) 외국법인(D->(100%) C->(60%) B) ->(60%) 질의법인

(질의내용)

- R&D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견기업 판단 시 외국정부가 중견기업법 시행령 §2①(1)나목 괄호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정부도 포함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인1591, 2022. 5. 18.)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했던 쟁점법인과 달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지분율의 차이만 있을 뿐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시 쟁점법인의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쟁점법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설립 당시에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8년에서야 제조업을 부업종에 추가하거나, 주업종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도소매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